

【주제발표 I】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권익향상

송 양 호
전북대학교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권리향상

I. 머리말

국가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산업분야인 농업과 농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생산성과 상관없이 각국이 농업을 획일적인 세계화 논리에 의한 정책으로 저울질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의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에 대한 보호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간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농업의 장려와 보호가 국가의 책무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생산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 특히 여성 농업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전문화된 영역에서 여성들은 잠재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의 대상정도로 치부되고 있지만, 여성의 역할은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다. 농촌사회에서 여성의 역할도 또한 이전에 비하여 월등하게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인 부분에서 농촌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여성농업인은 상대적으로 역할에 비하여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성정책 또는 농업정책에서 항상 보호의 대상자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농촌 사회의 주역으로서 또는 주체로서 파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농촌사회의 주체로서 파악하기 위하여 어떤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 역시 여성농업인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고 제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답습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농업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또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상응하는 권리보호를 위해서 여성농업인을 농업분야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서 농업정책과 각종 사회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직업인으로서 경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각종 상·재해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 인정 방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익을 찾고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져야만 한다. 항상 여성농업인을 보호의 객체로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농업의 주체로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여성농업인에 관한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고, 그를 근거로 앞으로 전개되어져야 할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또는 법적인 장치들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14,391,374(2000년) 가구 중 농가는 1,264,431(2003년) 가구로서 전체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9.5% 정도이다. 2003년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47,925,318명 중에서 농가인구는 3,530,102명으로 전체인구 중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4%이다.¹⁾ 2003년 농가인구 3,530,102명 중에서 남자는 1,715,127명이고 여성은 1,814,975명으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48.6%와 51.4%이다.²⁾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나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고 말할 수 있고, 생산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농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수치로 비교하여 농촌이나 농업인의 비중을 따질 수는 없을 것이다.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여성의 비율은 1990년 49.9%에서 2000년 50.9%, 그리고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주종사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48.3%에서 52.5%로 증가하여 여성의 비중이 4.2%나 증가하였다. 또한 15세 이상 농가인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은 남성이 1990년에서 2000년까지 10년 동안 7.5% 증가한 데 비해 여성은 25.4%로 남성 증가

1)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3 농촌생활지표, 38면(농림부, 농림통계연보 인용)에서 재인용. 이하에서는 2003 농촌생활지표라 칭한다.

2) 2003 농촌생활지표, 39면.

율의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동안 남성이 11.5%의 증가율을 보인데 대하여 여성은 26.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15세 이상 농가인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농업이 여성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즉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1. 가사종사자로서 여성농업인

도시의 여느 가정주부와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도 농촌가정에서 가사를 꾸려가고 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에서 대부분의 살림을 여성농업인이 맡아서 하고 있다. 특히 도시에 비하여 농촌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도 많아서 더 많은 가사일 분담을 요구받고 있다. 2002년 통계청 조사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도시의 경우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일을 하는 경우는 37.8%, 부인이 주로 가사일을 하고 남편도 분담을 하는 경우는 51.5%였다. 농촌의 경우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일을 하는 경우는 38%, 부인이 주로 가사일을 하고 남편이 분담하는 경우는 48.7%였다.³⁾ 농촌과 도시의 구분을 떠나서 부인이 대부분의 가사일을 돌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나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가사종사자로서의 역할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인프라가 도시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여성의 경우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농촌여성의 경우보다 많이 주어지고 있고, 생활의 편리함 또한 비교할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가사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생활, 건강생활, 주거 및 환경, 소비, 교육, 여가생활, 가족생활, 사회복지, 지역생활 및 정보화 부분 등 모든 영역에서 도시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농촌의 경우에 여성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농촌여성의 경우 항상 잠재적인 피해의식을 가

3) 2003 농촌생활지표, 194면. 가사일 분담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태도에 관한 농촌진흥청 농촌 생활연구소의 농촌생활지표조사보고서는 2003 농촌생활지표, 195면; 2004 농촌생활지표조사보고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125면(이하에서는 2004 농촌생활지표조사보고서라 칭한다) 참조.

지고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농업종사자로서 여성농업인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을 위에서 열거한 수치로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농사일 분담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한다는 비율이 60.4%로 가장 높았고 남편이 주로 15.2%, 다른 가족원과 함께 10.5% 등이었다. 2002년과 비교하여 부부가 함께 하는 비율이 2% 증가하였으며, 남편이 주로 하는 비율은 3.1%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성의 농업노동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4조는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농업·어업, 농촌·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업 및 어업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

농업인의 주된 역할은 농사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즉 농작업이다. 농작업은 농업인의 행위이고, 농업인은 농작업이라는 행위를 하는 주체이다. 남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사이에 농작업의 범위는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여성농업인은 비닐하우스 재배나 원예재배 등 남성농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한 농작업을 행한다고 할 수 있다. 농사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행위도 농작업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다. 즉, 농사일을 하는 것은 농업인의 기본적인 행위이고, 농업인이 농사일을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농사일의 보조행위이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수리하려 하는 행위, 농약을 구입하러 가는 행위, 각종 영농교육을 이수하는 행위 등이 농작업과 관련이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농작업의 범위가 반드시 남성농업인을 중심으로만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은 이제 농촌거주 비율면에서나 또는 농사일 분담정도의 비중면에서 농촌

4) 자세한 것은 2004 농촌생활지표조사보고서, 123면; 2003 농촌생활지표, 194면 참조.

사회의 주축이 되어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의 측면에서 주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3. 지역사회활동자로서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참여, 사회단체 가입 및 활동 정도, 자원봉사 참여율,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농촌과 도시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다.⁵⁾ 남성과 여성 을 구분하여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과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비농가 여성과 농가 여성 사이에 현격한 차이는 없을 듯 하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다른 어떤 직업군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촌지역사회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증가는 현대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면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법제와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농업·농촌기본법과 여성농어업인육성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성농업인에 관한 법적 지위와 관련된 조문은 여성농어업육성법과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따른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⁶⁾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인

5) 자세한 것은 2004 농촌생활지표, 43, 46, 47면 참조.

6)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인데, 시행령에 따르면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⁷⁾

현재 여성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에 열거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여성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농지가 1천제곱미터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⁸⁾. 소유농지소유형태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본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극히 저조한 형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위주의 상속이 이루어져 왔고, 혼인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농지에 대한 농지 소유의식이 낮았던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상속법상 법정상속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자녀들은 균분하여 상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⁹⁾ 남자나 자녀에게 상속시켜야 한다는 의식만 전환하게 되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혼인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가족농에 속하는 여성의 경우 적극적으로 본인 명의의 농지 소유 의사를 밝힌다면 농지를 소유하는 여성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농업경영을 통한 농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여 농산물 판매를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판매대금도 대부분이 남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어서 가족농인 여성농업인이 독립적인 신용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또한 여성이 농협조합원이 되어도 농산물 판매대금 입금통장은 남편에게로 통합

7)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조.

8) 농지경영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소유명의)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농지경작(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사실증명을 통하여 가능하다. 참고로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정당시인 '98년 기준 경제규모 1천제곱미터 이상 농가는 전체농가(1,413,017호)의 97.5%를 차지하고 있었고, 경지가 없는 농가(전체대비 1.52%) 및 0.1ha 미만 농가(전체대비 0.1%) 중 축산농기가 1.86%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9) 민법 제1009조 참조

하는 것을 농협에서 권하고 있고, 실제로 여성농업인 명의의 통장이 있더라도 농산물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등 거래실적이 낮아서 대출 등에서는 유용한 방법이 되지 못 할뿐더러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으로도 별반 실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여성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인정받기 위한 세 번째 방법으로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방법이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장 현실적인 데, 실제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농업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인정기관이 없고 증명방법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조항이다.

여성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각종 농업정책의 대상이 되고 연금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각종 재해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직업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나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 아니라 명목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즉, 여성농업인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인증절차나 인증기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인증기관과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여성농업인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세분화하여 직업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농법인·영농사업단 종사경력증명, 농어민후계자 증명, 농지원부 사본, 가축사육사실 확인서, 임금근로 형태의 농업취업자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좀 더 수월하게 농업종사사실을 인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을 인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행 농업인 단일규정을 세분화하여 독립경영주, 공동경영주, 준경영주, 임금근로자, 농업보조자 등의 개념으로 지위를 세분화하여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각각에 포함되는 기준을 보완하여 농업인 개념 속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농업인 지위를 세분화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고 농업인 개념 속에 포함시켜 농업의 주체를 확정짓자는 것과 함께 농업정책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법적 지위와 직업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

이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 보다는 우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효용성면에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을 남성농업인에 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한다든지 한다면 몰라도 또는 농업인 지위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달리한다면 몰라도,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비용과 노력이 많이 수반되는 지위의 세분화보다는 기준을 세분화하되 큰 틀의 농업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농업인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여성농업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노력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할 농업정책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에 비하여 직업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은 피해를 받고 있다. 여성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대부분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재해·재난 및 교통사고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 도시지역의 가정주부보다 일용일금이 적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제는 여성농업인을 농업정책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농업주체로 인정하여, 이들의 역할에 비례하는 권리를 부여해 주어야만 한다. 현재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중에서 11%만 직업인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83%는 아무런 법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농가를 가구 단위로 정의하면서도 개별종사자로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행 농업인에 관한 규정은 여러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직업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증기관과 인증절차가 결여되어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무급 종사자인 농업인가족종사자 및 여성농업인, 농촌임금근로자, 농업보조자를 다 수용하기

10) 프랑스는 1980년 농업법에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서 지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독일, 영국 등 유럽의 국가들은 공동경영주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가족경영협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각종 제도적 혜택과 연계하고 있다. 유럽과 같은 경영주 개념을 세분화하여 인정받는 방법이나 일본과 같이 제도적 혜택과 연계한 자율적인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위주의 사고방식, 소규모 영세농 위주, 나이가 많은 농업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행 기준을 세분화하여 법적으로 농업의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을 인정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이 다라고 볼 수 있다.

에는 미흡한 규정이다. 이는 명목상의 규정은 있지만 실효성을 의심받는 장식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의미에는 독립적 농업경영주 이외에도 종속적 농업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의 법적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 이외에도 종속적 농업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2) 삶의 질법 중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규정의 문제점

농업인복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이하 복지법이라 한다)과 농림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특별법(이하 삶의 질 법이라 한다)은 적용대상 및 범위, 방법 등이 중첩되고 있다. 물론 삶의 질법은 1차산업종사자인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복지법은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삶의 질법 또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누가 객관적으로 농업인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보호해야 할 영세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무급종사자들에게는 더 불리한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 물론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보험료부담율을 50%까지 높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굳이 중첩되게 장식적인 규정들을 나열했어야만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2004년부터 어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산재보상제도가 강제보험으로 해서 실시되었다.¹¹⁾ 농업부문에서는 1인 이상 법인사업장 소속 농업인 또는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의 직업성질환에 대해서는

11)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어업부분에서는 기존 수협공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원화된 보상보험을 통합하여 어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산재보상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어업인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같은 수준이다.

아무런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정부의 예산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업인재해공제는 농협의 조합원으로 우선 가입된 사람만이 가입을 할 수 있으나, 농업인의 업무상재해¹²⁾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단지 안전사고만을 담보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농어촌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복지개념이기 때문에 복지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직업적으로 특수계층인 농업인을 위해서는 삶의 질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농업인의 정년을 65세로 본다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은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연금이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복지법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한다. 65세 농업종사자 중에서 현재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농업인재해공제(68만명 가입)나 산재보험(2만명 가입)에 가입을 할 수 없는 농업인, 또는 임의가입형태이기 때문에 미가입한 경우, 아예 가입자격조차 없는 종속적 농업종사자 등으로 구분해 보면,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를 재회한 농업인재해공제가입자의 경우도 안전사고만을 보험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농작업과 관련하여 상·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결국에 형식에 치우친 법규정에 불과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법규정은 하나의 장식에 불과한 것이다.

3)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관련된 문제점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기본법은 2002년에 제정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다.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에 상응하는 권리보호·지위향상·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농어인의 경영능력향상과 지위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2)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업인의 업무가 어디까지 인지 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는 직업성 질환 및 안전사고가 농작업 및 관련활동으로까지 확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법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시행당사자의 의지와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하는 점이고 또한 세부적인 정책시행과 제도들을 창안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지, 기타 기초자료 준비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한 성급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위한다고 만든 제도나 정책들이 잘 정착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

1) 정년

직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직업인으로서 정년이 있다. 그런데 농업인은 일부가 직업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농업인은 정년규정이 없다. 농업인은 몇세부터 몇세까지가 정년인가? 농촌생활지표 등은 15세부터 농업인 인구를 조사하고 있다. 농협은 농협조합원과 그 배우자를 복수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농업종사자 중에서 농협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재해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 재해공제는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은 15세부터인가 아니면 18세부터인가?

농업인의 각종 재해 발생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면서 법원과 보험회사는 농업인의 정년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¹³⁾ 농업인재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77세 또는 79세까지이다. 그렇다면 농업인의 정년을 몇세로 하는 것이 타당할까? 이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현대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또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분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어서 농업인의 정년을 67세 내지 70세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¹⁴⁾

13) 일본에서는 농업인의 정년을 65세로 법정하고 있다.

14)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는 1990년 60세 이상 농업인이 31.3%였으나 1998년에는 48.7%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2000년 전체농가 인구 중에서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수는 51%에 이르고 있고, 65세 이상인 가구 수만도 32.7%에 달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남성농업인 보다 평균수명이 길지만, 남여를 구분해서 정년을 구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의 정년은 통일되게 확정해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상·재해시 적용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일용근로자 정년 기준은 합당하지 못하다. 농촌에서 농촌일용근로자 정년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청년에 비유되고 있다.

2)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평가

여성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여도 현재는 무급종사자로 분류되어 도시주부보다도 낮은 노동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의 경우 상·재해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수준이 결정되는 것에 비하여 너무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여성농업인들은 농가주부로서 가사를 책임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인으로서 인정된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상·재해시에 적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수준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유형이 개발되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확정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가 인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어 진다면 상·재해시에 보상수준이 적정하게 결정될 것이다. 또한 기관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농촌여성의 보상수준이 통일될 수 있을 것이다.

3) 직업성 재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를 제외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송종사자 등 1인 경영 자영업자 내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직 형태의 근로종사자 또는 종속적 근로자 개념을 인정하여 산재보

협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소득이 낮은 대부분의 자영농은 경영주로만 파악을 하고 있고, 산업안전관련 법률 미비를 이유로 하여 농업인의 직업성 재해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고 있지 못하다.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을뿐더러 직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농업인재해공제에 가입은 농협조합원이 되면 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농협협동조합법은 세대당 복수조합원 가입을 인정하고 있어서 농협조합원과 그 배우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지만, 농사일을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에도 농협조합원으로 배우자를 가입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성농업인이 농협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농업인재해공제에 가입한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여성농업인이 농기계를 다루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고 농작업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서 농작업 관련 질병과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업의 범위도 확정되어 있지 못할 뿐더러 농업인의 직업성질환과 재해도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농업인재해공제가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농작업 과정에서 상·재해나 질환을 입었을 경우에 충분한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IV. 여성농업인의 권리 향상 방안

1. 의식전환의 필요성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우선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의식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농업인 단체들과 농업인단체등이 자발적으로 주축이 되어야 한다. 그를 통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주체인 경영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 노력이 결부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무급 종사자로서 인식되고 있는 여성·후계농업인 등 가족종사자를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의식을 깨어서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한 분발을 하지 않는다면, 여성농업인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노력을 스스로 할 때만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식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지침과 교육방법을 개발해 내고 홍보를 독려하는 것은 여성농업인 관련 기관의 임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직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이 인정되어야만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영농의욕도 고취될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또한 신용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다.

2.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또는 몇 명인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를 먼저 세운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가 흡결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법을 제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와 직업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농업생산의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이 보호의 대상 만이 아닌 정당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규정과 정책, 제도가 실효성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또는 방사효과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확정해야 한다. 현재 여성농어업육성법과 삶의 질법 또는 복지법에 규정된 내용들은 충분히 훌륭한 것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 여성농업인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항상 정책순위에서 밀려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V. 맷는 말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가간·지역간 자유무역협정과 WTO DDA협상결과에 따라서

농촌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견인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보다는 실패와 좌절만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무급종사자로서의 여성, 특히 여성농업인의 인정과 권리보호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상응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보호의 객체로서 인식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라는 산업의 생산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일 뿐이다. 이를 통하여 여성농업인들이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등등한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는 한사람 또는 한 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관련단체와 기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통일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지킴이로서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들에 대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직업인으로서 인정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